

환경부 공고 제2024-213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4. 3. 26.

환 경 부

환경부 공고 제2024-213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6일

환경부장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현행 고시는 안전기준에 식품으로 오인·혼동되는 생활화학제품 용기·포장의 금지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나, 식품 오인·혼동 여부 판단이 모호한 제품의 경우에 이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여부 최종 결정을 위한 위원회 등 장치 마련이 필요하고(안 제10조),

생활화학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중량·용량 등이 감소하는 경우 소비자가 쉽게 해당 변경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중량·용량 등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별표 6」 II.7.나.)

2. 주요 내용

가. 생활화학제품 식품 오인·혼동 심사위원회 신설(안 제10조)

용기 또는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준 중 식품 오인·혼동 적합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최종 판단을 위한 「생활화학제품 식품 오인·혼동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

나. 제품의 중량·용량 등 변경 사실 표시 신설(안 「별표 6」 II.7.나.)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및 합리적 선택 지원을 위해 중량·용량 등이 감소하고 단위가격(출고가격 기준)이 상승하는 경우 중량·용량 등 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heroyoon@korea.kr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 세종청사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24)

환경부 고시 제2024 - 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8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 월 일

환경부장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위원회 등의 운영)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별표3] 용기 또는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준 중 식품 오인·혼동이 모호한 제품의 판단 등을 위한 「생활화학제품 식품 오인·혼동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별표 6』 Ⅱ. 표시사항별 표시방법 7. 중량·용량·개수·매수·크기 본문의 “제품의”를 “가. 제품의”로 하고, “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제품의 중량·용량·개수·매수·크기가 변경(감소한 경우에 한함)한 경우,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변경된 사실을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제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가 변경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위가격(출고가격 기준)이 상승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시) 중량 00g(중량 변경 제품, 00g→00g 또는 00% 감소), 중량 00g(이전 중량 00g) 등

부칙<제2024- 호, 2024. .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p>일(범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제품 표시시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범위 이내의 단일값을 표시하여야 하며, 제품 내 성분 및 배합비가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하며, 승인 대상 제품의 경우에는 승인받은 사항을 토대로 판매되는 단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p> <p><u><신 설></u></p>	<p>----- ----- ----- ----- ----- ----- ----- -----</p> <p>나. <u>제품의 중량·용량·개수·매수·크기가 변경(감소한 경우에 한함)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변경된 사실을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제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가 변경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위가 격(출고가격 기준)이 상승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u>(예시) 중량 00g(중량 변경 제</u></p>

현 행	개 정 안
8. ~ 23. (생 략)	<p><u>품, 00g→00g 또는 00%</u> <u>감소), 중량 00g(이전 중</u> <u>량 00g) 등</u></p> <p>8. ~ 23. (현행과 같음)</p>